

정조~고종대 『日省錄』 科舉 시행 기사의 작성

방식 검토*

박 현 순**

-
- | | |
|---------------------------------|--------------------------|
| 1. 머리말 | 4. 『일성록』과 『조선왕조실록』 과거 시행 |
| 2. 『일성록』 과거 시행 기사의 구성 원리 | 기사의 비교 |
| 3. 『일성록』 과거 시행 기사의 추이와 文型
변화 | 5. 맷음말 |
-

초록: 『일성록』 과거 기사의 작성 방식은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일성록』 전체를 관통하는 강목체로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기사에 수록할 내용과 文型에도 통일을 기하였다. 또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달리 생원·진사시와 문무과의 초시, 복시, 전시 등 시험의 전단계를 기사화하였다. 나아가 시험문제, 응시자 수, 제출 답안 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일성록』은 과거 기사에 관한 한 가장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기사의 수록 정도는 고종대 다소 하락하는 경향이 보이지만 모든 단계의 시험을 기사로 작성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고수되었다. 따라서 『일성록』에 수록된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배열하면 정조대에서 고종대까지의 과거 시행 경향을 통시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나아가 시험 문제와 응시자 수 정보를 통해 장기적인 출제 경향과 응시자 수의 변동 추이도 파악할 수 있다.

핵심어 : 日省錄, 과거, 書題, 入門數, 收券數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1-A00007).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

1. 머리말

조선에서는 개국 직후인 태조 2년(1393)부터 고종 31년(1894) 5월까지 502년간 과거를 실시하였고, 시행 사실을 實錄에도 수록하였다. 하지만 실록은 최종단계의 시험을 위주로 기사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매우 소략하다. 또 『승정원일기』는 과거 시행에 관련된 행정적인 처리 과정은 자세히 나와 있으나 과거의 시행 사실을 따로 기재하지는 않았다. 단지 기사를 통해 과거가 시행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일성록』은 모든 과거와 성균관 과시의 시행 사실과 그 결과를 별도의 기사로 게재하였다. 순조 27년(1827) 柳本藝가 편찬한 『일성록범례』에는 ‘科試類’가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과거 기사가 『일성록』을 편찬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기사의 하나였음도 알 수 있다. 『일성록』은 적어도 과거의 시행에 관한 한 실록이나 『승정원일기』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¹⁾

『일성록』은 승정원 등 여러 관서의 문서를 선별·요약하여 강목체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다. 그 중 핵심 자료는 승정원에서 제공한 자료였다. 따라서 기사의 상당부분이 『승정원일기』와 중복되기도 한다. 그러나 강목체를 활용하여

1) 『일성록』은 정조대부터 작성된 국왕의 국정운영 기록이다. 현재 정조의 세손시절인 영조 36년(1760)부터 국권이 상실된 응희 4년(1910)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현존본을 기준으로 보면 완질본은 2,357책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이 중 30책이 결락된 2,327책이 남아 있으며 중복본 5책도 전한다. 또 순조대 효명세자의 대리청정기에 『일성록』과 동일 방식으로 작성한 『代廳時日錄』도 전체 52책 가운데 제1책이 결락된 51책이 남아 있다. 다만 이 중 504책은 고종 10년(1873) 경복궁의 화재로 일부가 소실된 후 1년 반에 걸쳐 개수 보충한 것이다. 『승정원일기』 고종 11년 1월 23일(정묘) “奎章閣啓曰 緯綺及日省錄修正補充事命下矣 取考其卷數 則緯綺爲三十五卷 日省錄爲四百九十三卷之多” ; 같은 책, 고종 12년 6월 17일(임오) “奎章閣啓曰 緯綺三十五冊 日省錄五百四冊 補充畢役之意 敢啓”. 개수본 현황은 최승희, 1989 「1873年(高宗 10) 日省錄의一部 燒失과 改修」 『규장각』 12의 8면 <표 2>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한편 철종 즉위 후에는 『일성록』 중 은언군 관련 기사를 모두 도삭하였다. 이 현황은 다음 논문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이태진·홍순민, 1989 「《日省錄》 刀削의 실상과 경위」, 『한국문화』 10.

구성을 보다 체계화시켜 열람에는 물론 핵심적인 내용의 파악에도 훨씬 용이하다. 또 다른 관서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도 함께 활용하였기 때문에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지 않은 기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²⁾ 과거에 관한 기사도 그 중 하나로 다른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고유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성록』이 꾸준히 편찬된 것과 달리 정조대 이후 조선은 급격한 변동에 직면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성록』이 편찬된 시기 동안 조선에서는 안팎의 압력으로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가 위기에 직면에 있었다. 이런 시대적인 특성을 반영하듯 순조대 이후 실록과 『승정원일기』, 『일성록』도 갈수록 내용이 소략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연대기의 기록이 줄어드는 것은 국왕의 정보 장악력이나 중앙정부의 활동이 위축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³⁾

그러나 연대기의 내용이 점점 소략해지는 와중에도 과거는 계속 시행되었고, 『일성록』의 과거 기사도 지속적으로 작성되었다. 그 결과 『일성록』의 고유한 정보를 통하여 정조-고종대 과거 시행의 장기적인 추세를 조망할 수 있다. 아울러 『일성록』은 초반부터 기사의 용어와 文型에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전산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 보다 용이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⁴⁾ 다만 이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사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정조-고종대 『일성록』 과거 기사에 나타난 지속성과 자료적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조-고종대를 관통하는 『일성록』 과거 기사의 작성 방식을 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일성록』 과거 기사와 다른 연대기 기사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일성록』 기사의 자료적 특성과 함께 조선시대

2) 홍순민, 2004 「『日省錄』의 편찬 과정과 구성 원리」, 『민족문화』 27, 18-27면 ; 연갑수, 2004 「『日省錄』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 방안」, 『민족문화』 27, 39-53면.

3) 연갑수, 위의 글, 61-77면.

4) 『일성록』의 기사가 규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보다 전산화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연갑수가 앞서 지적하였다. 연갑수, 위의 글, 79-82면.

연대기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여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장과 3장에서는 먼저 『일성록』 과거 기사의 구성 원리와 정조~고종대 『일성록』 과거 기사의 수록 양상과 문형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어 4장에서는 『일성록』과 실록의 비교를 통해 『일성록』 과거 기사와 실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2. 『일성록』 과거 시행 기사의 구성 원리

1) 『日省錄凡例』를 통해 본 과거 시행 기사의 구성

『일성록』은 정조가 세손시절부터 써온 일기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체제가 처음 언급된 것은 정조 5년(1781)이다. 이즈음부터 승정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규장각 각신과 검서관이 『일성록』을 편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정조는 자신이 작성한 일기 초본을 병조참판 鄭昌聖에게 주어 『春坊日記』와 『承政院日記』로 보충하게 하였다. 각신들의 『일성록』 편찬과 정조가 직접 쓴 일기의 편집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조 9년(1785) 7월에 그 전해인 정조 8년(1784)까지의 『일성록』이 완성되었다.⁵⁾ 이때의 편찬 작업을 통해 『일성록』을 편찬하는 범례도 어느 정도 마련되었을 것이다.

그 후 『일성록』은 검서관이 草本을 편집하고 각신들이 내용을 검토하여 국왕에게 올리면 국왕이 다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다.⁶⁾ 기사 중 筵說은 겸교와 대교가 직접 편집하였으나 다른 기사의 편찬 작업은 전적으로 검서관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검서관들은 일성록 작성의 범례를 정리하여 업무에 활용하였다.

5) 홍순민, 앞의 글, 5-11면.

6) 『일성록』의 편찬 주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홍순민, 위의 글 참조.

먼저 정조·순조대 검서관으로 활동한 李光葵(?-1817)가 기사 작성 방법을 정리한 범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순조연간에 활동한 柳本藝(1777-1842)·柳本學형제가 이광규의 ‘舊本’을 분류하여 『일성록범례』를 편찬하였다. 이 책에는 순조 27년(1827)에 쓴 유본예의 서문이 실려 있다. 『일성록범례』는 현재 2종이 전하는데, 규장각 소장본은 현종대 말까지, 장서각 소장본은 고종 10년(1873)까지의 내용이 추가된 후사본이다. 전체 구성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장서각 소장본은 추가된 내용의 시기로 보아 경복궁 화재 후 소실된 『일성록』를 개수할 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⁷⁾

순조 27년(1827) 유본예가 쓴 『일성록범례』 서문에는 범례를 제시하는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일찌기 先進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일성록』은 일에 따라 편찬하니 반드시 일정한 규례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마땅히 써야 할 것을 쓰지 않거나 써서는 안 되는 것을 쓰는 것과 강을 세우고 목을 나누는 규례는 범례가 없을 수 없다.”⁸⁾

유본예는 서문에서 『일성록범례』가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수록할 내용을 적절하게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綱과 目을 나누어 기사를 편집할 때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일성록범례』의 구성에도 반영되어 있다.

규장각본의 서두에 수록된 目錄에 따르면 『일성록범례』는 綱의 작성 방식을 다룬 ①立綱總例와 주제별 구분인 ②天文類, ③祭享類, ④臨御召見類, ⑤頒賜恩典類, ⑥除拜遞解類, ⑦疏箚類, ⑧啓辭類, ⑨草記書啓別單類, ⑩狀啓類, ⑪科試類, ⑫刑獄類, ⑬舊例書今例不書秩, ⑭各月抄上文書, ⑮雜錄 등 총 1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으로 『내각일력』의 작성 범례인 ⑯日曆凡例가 실려 있다.⁹⁾

7) 『일성록범례』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다음 글 참조. 유본예 지음, 김경희 옮김, 2015 『일성록범례』, 한국고전번역원.

8) 유본예, 『일성록범례』 서 “曾聞先進言 則日省錄遂事編纂 不必有一定之規 然當書而不書 當不書而書 與立綱分目之規例 不可無凡例”

내용상으로 보면 ①立綱總例는 綱의 문형을 구성하는 기본 원칙으로 총론에 해당되며, ②天文類부터 ⑪刑獄類까지는 『일성록』에 수록해야 하는 내용에 해당된다. ⑫舊例書今例不書秩 이하는 참조 및 유의 사항이다. 위의 순서는 『일성록』을 편찬할 기사를 배열하는 순서이기도 하였다. 『일성록범례』總例에서는 매일 기사를 작성할 때 ②천문류와 ③제향류를 먼저 쓰고 ⑫형옥류는 맨 마지막에 써야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⁰⁾

과거 기사에 대한 범례는 ⑪科試類에 정리되어 있다. 순서로 보면 그리 중요도가 높지 않지만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사실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과시류는 12개의 세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은 짧은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책 전체의 목록이 『일성록』에 포함시켜야 할 기사의 분류라면 類別 예시는 綱目的 기사를 작성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이다. 이외에 ④臨御召見類와 ⑨草記書啓別單類에도 일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장서각본에는 頭註로 추가한 내용도 있다.

『일성록범례』에서 기사 작성의 예문이 제시된 시험 종류는 생원·진사시, 문무과, 성균관시험, 檢書官 取才, 翰林召試, 入直文官應製 등 매우 다양하다. 아래에서는 성격이 다른 한림소시, 검서관취재, 입직문관응제 등을 제외하고 과거와 성균관課試로 범주를 제한하여 『일성록』과거 시행 기사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¹¹⁾ 과거와 성균관 과시로 나누어 각각의 기사 항목을 시험 절차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9) 본문을 보면 ⑬舊例書今例不書秩과 ⑭各月抄上文書 사이에 ⑯朝紙中得書諸條가 있고, ⑮잡록과 ⑯일력범례 사이에는 ⑰似爲而不爲秩, 명단의 기재 순서를 정한 ⑲八道次序, ⑳三司座目, ㉑侍講院座目, ㉒翊衛司座目 등의 항목이 있고, ㉓일력범례의 뒤에는 다시 ㉔上言式과 ㉕儀註謄錄이 추가되어 구성이 훨씬 복잡하다. 이 儀註謄錄은 본래 유본에가 별책으로 편찬한 것인데 현준본에서는 원책의 부록으로 삽입되어 있다. 순조 27년 유본에가 『일성록범례』를 재구성한 것은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이 시작되고 『代聽時日錄』을 편찬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유본례, 『일성록범례』「總例」“日省錄出草時 當日內事端 不可先後倒錯 故雖有傳教軸 次序若有可疑 則考檢於朝報·分撥中次序”； 같은 책, 「總例」“當日內事端 必首謹書天文 次謹書廟宮祀享 以所敬爲先”； 같은 책, 「雜錄」“日省錄出草時 刑獄文書 必付於末端”

11) 과거에는 잡과도 있지만 『일성록범례』에서는 잡과 관련 사항이 ‘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목록[舊例書今例不書秩]’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관련 조항도 보이지 않는다.

〈표 1〉 『일성록범례』 과거 시행 기사의 예시

절차	시험종류	구성기사	분류	비고
擇日	전체	● 禮曹以增廣諸科吉日推擇啓 ② 該曹啓言	草記書啓別 單類	
開場 [시험 시행]	감시초시	● 設監試初試于一二所 【一所試官 二所試官】 【臺試勿書】	科試類	
	식년문과회시	● 設式年文科會試 【試官座目】 【會試或稱生割試】	"	【】는 장서각본 두주
	정시무과	● 判下慶科庭試武科規矩 【若推後改落點則 改點下某科規矩】 ② 原榜人云云	"	
出榜 [榜目 入啓]	감시초시	● 監試一二所進初試榜目 ② 一所幼學○○○居首 二所幼學○○○居首	"	
	식년문과초시	● 式年文科東堂初試一二所進榜目 【試官】 ② 一所幼學某 二所幼學某 居首	초기서계별 단류	
	정시문과초시	● 庭試文科初試一二所進榜目 ② 一所幼學某〈居首〉二所幼學某 居首	과시류	〈〉는 장서각본 효주
	증광무과초시	● 慶科增廣武初試一二所進榜目 ② 一所閑良某〈居首〉二所閑良某 居首	"	"
	식년무과복시	● 式年武科覆試一二所進榜目	"	장서각본 두주
	식년문과회시	● 式年文科會試進榜目 ② 取幼學某等三十三人	"	
放榜	식년문무과	● 御春塘臺行式年文武科放榜 【殿試同例】	臨御召見類	【】는 장서각본
謝恩	문무과	● 御○○○親受文武科謝恩	"	

【】는 세주로 작성하는 부분, 【】는 기사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을 기록한 부분

『일성록범례』의 과거 기사는 擇日, 開場[시험 시행], 出榜[榜目入啓], 放榜, 謝恩 순으로 시험의 전 과정을 모두 기재하게 되어 있다. 기록하는 시험의 종류는 식년시, 증광시, 정시 등의 각종 문무과와 감시이며, 시험 단계는 초시, 회시, 전시의 전단계에 이른다. 즉, 과거가 시행될 때마다 택일에서부터 사은에 이르는 전 일정을 모두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복수의 예시가 제시된 開場[시험 시행] 기사와 出榜[방목입계] 기사를 보면 각 기사의 서술구조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의도한 것도 볼 수 있다.

우선 개장 기사에서는 감시초시 항목의 ‘設+監試初試+于一二所【一所試官 二所試官】’이 기본적인 문형이다. 이 문형은 ‘設+시험종류+于장소【시관명단】’의 형식으로 문무과와 생원·진사시 초시·복시의 모든 시험에 통용되는 문형이다.

이와 다른 ‘식년문과회시’ 항목과 ‘정시무과’ 항목은 특수한 경우의 예시이다. ‘식년문과회시’ 항목은 식년시 문과 복시 중장·종장 제술시험의 기재 방식을 제시한 것이며,¹²⁾ 정시무과 항목은 武科 殿試에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국왕이 시험 전에 시험과목과 선발 기준을 제시하는 기사의 예문이다. 즉, 두 예외를 제외한 초시·복시 기사는 모두 동일한 문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출방일의 기사는 모두 여섯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험종류+試所+進榜目’의 형식으로 강을 제시하고, 目에서 “一所○○○居首”와 같이 시소별 거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형식이 통일되어 있다. 다만 ‘식년문과회시’의 경우에만 目이 ‘取○○○等三十三人’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식년시 문과 복시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특수한 기재 방식이다.

그런데 출방일 기사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각각의 문형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감시초시는 ‘監試一二所 進初試榜目’과 같이 서술부를 ‘進初試榜目’으로 기재하였으나 다른 시험은 모두 ‘進榜目’으로 되어 있다. 또 식년문과초시 항목에서는 출방일 기사에 시관 명단을 수록하였는데, 다른 시험은 모두 개장일 기사에 시관 명단을 수록하였다. 시험 명칭도 ‘식년 문과 복시’와 같은 방식이 가장 간명한 형태이지만 식년문과초시는 ‘式年 文科 [東堂] 初試’, 증광무과초시는 ‘[慶科]增廣武初試’와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출방일의 기사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문장의 구조나 시험명칭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

12) 식년시 문과 복시는 초장의 강경시험에서 粗 이상의 성적을 받은 응시자만 중장·종장의 제술시험에 응시하고, 초장·중장·종장의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전기부터 강경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경 고득점자는 제술시험의 성적에 상관 없이 합격시키고, 그 나머지를 초장 강경 성적과 중장·종장의 제술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선발하였다. 『일성록』에서는 초장의 강경 시험을 ‘복시’로 지칭하였고, 성적을 합산한 경우는 ‘생획시’ 혹은 ‘회시’로 지칭하였다. 위의 조항은 ‘생획시’를 ‘회시’로 기재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다. 유본에는 이광규가 편찬한 舊本을 분류하여 『일성록범례』를 만들었다고 언급 하였는데, 이것은 곧 전례들을 여러 분류로 나누어 배치하였다는 것으로 전체적인 일관성을 염두에 두고 문형을 새로 구성한 것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즉, 『일성록 범례』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가 보다는 관행화된 예문들을 정리한 책에 가깝다.

한편 『일성록범례』에는 殿試와 전시에 준하는 정시·알성시의 기재 형식이 누락되어 있다. 다만 장서각본의 식년시 문무과 방방 항목에 ‘殿試同例’라는 세주가 달려 있고, 이를 통해 전시의 경우에도 ‘御+장소 行+시험종류’, 즉, ‘御仁政殿 行式年文科殿試’와 같은 문형이 통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당초에 편찬자가 체계적으로 예시를 구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 2〉 『일성록범례』의 成均館 課試 시행 기사 예시

절차	기사 구성	분류	비고
시행	● 設三日製于泮宮 ③ 教曰 都承旨持此御題 與弘文提學偕往泮宮 試取以來 ○以〇〇〇爲賦題【入門幾人 收券幾人】	과시류	
친립 시행	● 御仁政殿行春到記【試官】	임어소견류	
	● 御仁政殿行日次儒生殿講【試官】	과시류	장서각본 두주
과-次	● 行三日製科次于〇〇〇 ③ 教曰云云 ○又教曰入格儒生明日待令	"	
御考	● 考下湖南儒生試券[戊午六月十八日例]/先朝時 ③ 先是 以荷輿倪仰亭爲詩題 押亭 以將軍樹爲賦題 [. . .]	"	
召見	● 行次對于熙政堂 召見入格儒生	임어소견류	

成均館 課試는 성균관을 매개로 시행하던 각종 시험이다. 일일제, 삼일제, 칠일제, 구일제 등의 절일제와 相製, 應製, 春秋到記, 日次儒生殿講 등이 이에 해당된다. 원래는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하던 시험이었으나 일반유생에게 응시가 허용 되기도 하였다.

『일성록범례』에 보이는 성균관 과시 시행 기사는 開場[시험 시행], 科次[채점], 入格儒生 召見의 간단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일제, 춘도기, 일차유생전강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 역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각각의 문형은 절차가 유사한 다른 시험에도 적용되었다.

성균관 과시는 국왕이 직접 시험장에 직접 나가는 경우와 書題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장 기사도 국왕의 친립 사실을 앞서 기재한 ‘御+시험장소+行+시험종류’라는 문형과 개장 사실을 ‘設+시험종류+于+시험장소’의 형식으로 纲에서 제시하고 目에서 御題를 보낸 사실을 부기하는 두 가지 형식이 사용되었다.

科次는 국왕의 시험장 친립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관들이 답안을 채점하여 우수한 답안을 선별하면 국왕이 최종적으로 등위와 성적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을 ‘行+시험종류+科次于+장소’, 예를들면, ‘行人日製科次于仁政殿’과 같은 문형으로 기재하고, 目에서 ‘敎曰云云’으로 시상 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다만 정조의 경우 직접 답안을 채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考下+시험종류+試券’의 문형을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성균관 과시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역시 기사의 작성 방식은 통일되어 있었다. 이를 관통하는 원칙은 국왕의 행위 여부에 따라 술어를 ‘行’자와 ‘設’자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즉, 국왕이 시험장에 친립하거나 과차에 참석한 경우는 ‘行’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設’자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앞서 보았듯이 과거의 殿試나 放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아울러 국왕이 답안을 직접 채점한 경우는 ‘考下’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통해서도 『일성록』의 과거 기사는 국왕의 행위를 다른 경우와 구분하여 표현하고자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성균관 과시 기사는 식년시 기사에 비하여 문형이 보다 통일된 형식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성록범례』는 전례를 종합한 사례집으로 구성이 그리 체계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일성록』이 모든 과거와 성균관 과시의 시행 과정을 기사화하였고, 그 문형에도 통일을 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시험 종류 간에 통일성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이 범례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면

서절로 통시적인 일관성이 만들어지게 된다.

실제 모든 기사가 범례와 동일하게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범례는 지속적으로 기사 작성의 준거가 되었다. 그 결과 통시적 일관성이 형성되면서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 자료를 보다 쉽게 추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考下’라는 용어를 통해 국왕이 親考한 시험의 사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방법이 자료를 추적하는 데 하나의 단초가 됨에는 틀림이 없다.

2) 『일성록』과 『승정원일기』의 과거 기사 비교

『일성록』은 일차적으로 승정원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활용하여 편찬되었다. 이런 탓에 정조는 처음 『일성록』을 구상할 때부터 『승정원일기』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실제 현전하는 기사를 보면 두 책의 기록이 상당히 중복되는 것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기록은 편찬 체제가 서로 달랐다.¹³⁾ 아래에서는 『일성록』의 과거 기사를 『승정원일기』와 비교하여 『일성록』 편집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조 13년(1789) 식년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해당 시험에 대한 두 기록을 비교해보면 먼저 한가지 큰 차이가 발견된다. 『일성록』에는 감시의 초시와 복시, 문무과의 초시·회시·전시까지의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에는 초시와 복시에 대한 명시적인 시험 시행 기사는 없다.

가령 이 시험의 생원·진사시 초시는 전해인 정조 12년 8월 20일에 개장하였는데, 『일성록』에는 ‘設式年監試初試’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의 당일 기사에는 과거 시행에 관련된 기사가 전혀 없다. 다만 그 전날인 8월 19일에 시관을 의망하는 기사가 있어서 다음날 초시를 시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시관은 시험 전날 낙점하기 때문이다. 출방의 경우에도 『일성록』에는 8월

13) 『승정원일기』의 편찬체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김종수, 2003 「『승정원일기』 편찬체제와 타 문헌과의 비교 검토」, 『人文學論叢』 3 ; 吳恒寧, 2006 「조선후기 《承政院日記》改修 연구」, 『泰東古典研究』 22 ; 명경일, 2014 「傳教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謄錄체계」, 『古文書研究』 44.

25일에 ‘監試初試一二所 進初終場榜目’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지만 『승정원일기』에는 관련 기사가 전혀 없다. 초시와 복시 기사는 『일성록』에만 실려 있는 정보인 것이다.

국왕이 친립하는 전시의 경우에는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 모두 기사가 등장한다. 두 기사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승정원일기』의 기사 중 굵게 표시한 부분은 『일성록』에 수록된 내용이며, []로 표시한 부분은 명단을 축약한 부분이다. 그리고 『일성록』에서 〔 〕로 표시한 부분은 『승정원일기』에 없는 내용을 추가한 부분이다.

『승정원일기』 정조 13년(1789) 3월 10일

○ 己酉三月初十日卯時 上詣仁政殿 親臨文科殿試 仍詣春塘臺 親臨武科殿試入侍時
 [行都承旨金載瓚 行左承旨徐鼎修 行右承旨俞恒柱 左副承旨金光默 右副承旨洪仁浩
 同副承旨申耆 假注書白慶楷·徐有聞 記注官金鳳顯 記事官李相璜 檢校直提學徐有防
 待敎金祖淳 以次入侍]

上具翼善冠·袞龍袍 乘輿出協陽門·肅章門 由仁政門 御仁政殿

引儀唱試官以下入就位行四拜禮

[讀券官判中樞府事金煜 刑曹判書沈頤之 行副司直閔鍾顯 對讀官行副司直曹允大·申應顯 校理洪義浩 兵曹佐郎李義觀等] 率舉人入就位 行四拜禮訖

[· · ·] 命書御題 仍懸題訖

[· · ·] 上乘輿 出仁政門 由肅章門·建陽門·青陽門 詣春塘臺 御帳殿

引儀唱試官以下入就位行四拜禮

[考官左議政李性源 漢城判尹李在簡 行副司直趙心泰 參考官行副司直沈命德 行副護軍許任 修撰李錫夏 宣傳官李謙會 丹楓亭考官右議政蔡濟恭 行司直金鍾秀 行副司直徐有大 參考官禮曹參議金履正 行副護軍李潤國 副司果李敬五 都摠經歷徐有鳳 講試官行副司直徐有防 行副護軍柳孝源 副校理李東稷 都摠都事金宗洙等] 率應射人 入就位 行四拜禮訖

應射人以次應射 應講人以次應講

[· · ·] 命諸臣退 諸臣以次退出

○ 己酉三月初十日午時 上御誠正閣科次入侍時

[行左承旨徐鼎修 假注書白慶楷 記注官金鳳顯 記事官李相璜 讀券官判府事金煜 刑曹判書沈頤之 行副司直閔鍾顯 對讀官行副司直曹允大 行副司直申應顯 校理洪義浩 兵曹佐郎李義觀] 以次進伏訖

[· · ·] 考訖

[· · ·] 命退 諸臣以次退出

『일성록』 정조 13년(1789) 3월 10일

Ⓐ 御仁政殿 行文科殿試 仍詣春塘臺 行武科殿試 【文科試官 金燈 沈頤之 閔鍾顯 申應顯 曹允大 洪義浩 李義觀 武科試官 李性源 蔡濟恭 金鍾秀 李在簡 徐有大 趙心泰 沈命德 金履正 許任 李潤國 李敬五 李錫夏 李謙會 徐有鳳】

Ⓑ 具翼善冠 · 袞龍袍 乘輿 出協陽門 詣仁政殿 降輿 陞座

侍臣 先就拜位行禮 試官及應試人 各就拜位行禮訖

『以觀豐閣爲銘題 懸題訖』

乘輿 出仁政門 由青陽門 詣春塘臺 降輿 陞座

試官及應射人 各就拜位 行禮訖

仍命應射人應射

[· · ·] 命退承史及侍衛諸臣仍爲還內

收券訖

行科次于誠正閣 [· · ·]

科次訖 『幼學徐榮輔居首』

『일성록』은 승정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편찬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자료에 기초하더라도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은 서로 다른 원칙에 따라 편집되었기 때문에 기사의 구성 방식도 달랐다.

『승정원일기』의 기사는 ‘上詣仁政殿 親臨文科殿試 仍詣春塘臺 親臨武科殿試 入侍時’라는 표현으로 먼저 시간과 공간,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이 『일성록』에서는 綱으로 편집되어 ‘御仁政殿 行文科殿試 仍詣春塘臺 行武科殿試’라는 사실의 표현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詣’자를 ‘御’자로, ‘親臨’을 ‘行’자로 바꾸는 문형의 변화도 있었다.

이어 『승정원일기』에는 관원들의 명단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일성록』에서는 ‘侍臣’, ‘試官’이라는 단어 하나로 대체하였다. 대신 시관의 명단은 관직명을 생략하고 성명만을 綱의 세주로 기재하였다. 그 외의 내용은 중요도에 따라 발췌하고, 표현을 압축한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科次 기사도 마찬가지다.

『일성록』에는 『승정원일기』에 실리지 않은 書題가 ‘以觀豐閣爲銘題’의 형식으로

목에 기재되어 있고, 과자 기사에는 居首의 직역과 성명도 실려 있다. 즉, 『일성록』의 과거 기사는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산삭, 압축하되 새로운 정보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 중 書題는 『일성록』에만 실려 있는 중요한 정보이며, 시 험종류와 상관없이 위에서 보듯 ‘以+[書題]+爲+[문체명]+題’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성균관 과시는 국왕이 친림하는 경우에는 殿試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사가 작성되었다. 여기서는 순조 19년(1819) 3월 6일 시제를 성균관에 보내 삼일제를 시행한 기사를 비교해 보자. 이 시험은 국왕이 승지에게 시제를 주어 성균관에 가서 試取하여 오게 하고, 승지가 답안을 걷어 온 후 채점하여 입격자들의 시상을 지시하는 간단한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승정원일기』의 굽은 부분은 『일성록』에 수록된 부분, 『일성록』의 『 』는 『승정원일기』에 없는 내용을 새로 추가한 부분이다.

『승정원일기』 순조 19년 3월 6일

- 傳于尹鼎烈曰 都承旨 持此御題 與弘文提學偕往泮宮 試取以來
- 又啓曰 臣與弘文提學金履喬偕往泮宮 三日製儒生試取 則收券爲二百十五張矣 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傳于尹鼎烈曰 科次入侍
- 己卯三月初六日申時 上御興政堂 科次入侍時 行都承旨尹鼎烈 假注書李憲號 記事官朴永元 記事官李憲球 弘文提學金履喬 藝文提學金魯敬 對讀官侍教徐憲淳 修撰李若愚 文學金教喜 以次進伏 上曰 右承旨入侍【出榻教】右承旨李光憲追入進伏 上曰 科次爲之 兩館提學及都承旨分考 履喬·魯敬·鼎烈 分軸考試訖 履喬曰 今番取幾人乎 上曰 取五人 仍命以次書等 履喬書等訖 上曰 拆封讀奏 可也 鼎烈 以次坼封讀奏 仍教曰 三日製居首賦三下生員宋持養 直赴會試 之次進士李肇新 紿二分 草三下生員洪殷燮等三人竝令該曹 考例施賞

『일성록』 순조 19년(1819) 3월 6일

- 『設三日製于泮宮』
- 教曰 都承旨持此御題 與弘文提學偕往泮宮 試取以來
- 『○以綠竹猗猗爲賦題【入門二百二十六人 收券二百十五張】』

● 行科次于興政堂

⑩ 教曰 三日製賦居首三下一生員宋持養 直赴會試 之次三下二進士李肇新 紿二分 之
次草三下生員洪履燮等三人 並令該曹考例施賞

〔又教曰 入格儒生 明日廣達門外施賞〕

『승정원일기』는 날씨, 문안, 왕명과 승지의 계사, 기타 관서의 초기·계사를 순서대로 기재하고, 마지막에 筵說과 같이 승지가 입시한 기사를 수록하였다. 이 중 과거 시행 기록은 傳敎와 승지의 계사에 나타나는데, 전체 왕명과 전교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다보니 사안에 관련된 기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에 비해 『일성록』은 ‘設三日製于泮宮’, ‘行科次于興政堂’이라는 강을 세워 국왕의 행위 사실을 제시하고, 目에서는 시행과 시상, 입시를 명하는 왕명만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 〕로 표시한 부분에 書題와 入門數, 收券數 정보를 추가하였다. 이 정보는 『일성록』에만 수록된 것으로 정조대부터 고종대까지의 시험 문제와 응시자 수, 답안 제출 수를 시계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일성록』 과거기사는 『승정원일기』와 비교할 때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우선 綱目體로 기사를 재구성하고 문형의 통일을 기하면서 열람이 매우 용이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초시·복시를 포함한 모든 시험의 시행과 출방을 기사화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御題와 입문수·수권수 정보를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이 정보는 『일성록』에만 수록된 정보로 정조대부터 고종대까지의 출제 경향과 응시 경향을 통시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¹⁴⁾ 이런 장점 때문에 『일성록』 과거 기사는 『승정원일기』을 능가하는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14) 『일성록』에 수록된 書題와 入門數, 收券數를 활용하여 과거 시행의 장기적 추세를 파악한 연구로는 다음 연구가 있다. 박현순, 2014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39-249면; 박현순, 2016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 『규장각』 48.

3. 『일성록』 과거 시행 기사의 추이와 文型 변화

1) 식년시 기사의 수록 양상과 문형 변화

『일성록』은 처음 편찬할 때부터 범례가 논의되었으며, 정조 8년까지의 『일성록』을 완성한 정조 9년에는 어느 정도의 편찬 범례가 갖추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조대에 편찬된 『일성록』을 보면 적어도 문형상에서는 『일성록범례』나 이 후의 『일성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아래에서는 역시 식년시와 성균관 과시의 사례를 통해 기사의 수록 추이와 문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식년시의 사례를 보자. 식년시 감시는 초시와 복시, 문과는 초시, 복시, 전시의 세 단계로 실시되었다. 그런데, 문과 복시는 초장의 강경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중장·종장의 제술시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는 네 단계가 된다. 유본예의 『일성록범례』에서는 강경시험은 ‘복시’, 제술시험은 ‘회시’로 구분하여 지칭하였다. 고종대 장서각본에는 ‘회시는 생획시로 칭하기도 한다[會試或稱生劃試]’라는 두주가 있다. 복시와 회시는 같은 의미이지만 『일성록』에서는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아래에서는 일단 그대로 ‘복시’와 ‘회시’로 서술하였다.

우선 당대에 편찬된 원본에 식년시 기사가 어느 정도 수록되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일성록』에서는 전시를 제외한 시험은 개장과 출방기사를 각각 작성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식년시에는 11번의 기사가 수록된다.¹⁵⁾ 그리고 원본이 현존하는 식년시의 시행 횟수는 정조대 5회, 순조대 11회, 현종대 5회, 철종대 4회, 고종대 8회인데, 이중 정조대 2회와 고종대 1회는 초시 기록이 개수본이다.¹⁶⁾ 이에 기

15) 이외에 指日, 放榜, 謝恩의 기사도 있으나 여기서는 분석을 생략하였다.

16) 현존하는 2327책 가운데 492책은 고종 10년(1873) 12월 경복궁 화재 때 소실되어 고종 11년(1874) 1월부터 고종 12년(1875) 6월까지 『승정원일기』 등을 토대로 다시 편찬한 것이다. 그 중에는 정조 즉위년부터 정조 9년(1785), 정조 15년(1791), 순조 즉위년(1800)부터 순조 4년(1804), 고종 즉위년(1864)부터 고종 9년(1872)의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개수본의 자세한 현황은 최승희, 앞의 글 참조. 영조 36년(1760)부터 고종 9년(1872)까지

초하여 각 단계의 기사를 1회로 간주하여 시행 횟수와 기사 수록 횟수를 정리해 보았다. 이를 보면 정조대는 47회 중 39회(83.0%), 순조대는 110회 중 86회(78.2%), 현종대는 55회 중 44회(80.0%), 철종대는 44회 중 32회(72.7%), 고종대 84회 중 50회(59.5%)의 개장, 출방, 전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전체 340회 가운데 251회, 73.8%에 대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순조대 중반 이후 『일성록』의 분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과거 기사는 수록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¹⁷⁾ 그러나 다른 왕대에 비해 고종대의 기사 수록 비율은 현저히 낮다.

〈표 3〉 정조~고종대 식년시 開場, 出榜의 『일성록』 기사 수록 : 왕대별(단위:회)

구 분 왕대	정조	순조	현종	철종	고종	합계
시행 횟수	47	110	55	44	84	340
기사 횟수	39	86	44	32	50	251
수록 비율	83.0%	78.2%	80.0%	72.7%	59.5%	73.8%

113년 중에 일부나마 개수가 이루어 진 해는 38개년에 이른다.

17) 현전본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일성록』의 왕대별 완질본 책수는 정조의 세손시절 44책, 정조대 633책, 순조대 637책, 현종대 211책, 철종대 223책, 고종대 576책이다. 개략적인 연평균 책수를 추산해 보면 정조대 26책을 정점으로 순조대 19책, 현종대 14책, 철종대 16책, 고종대 13책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고종 11년(1874)에 완성된 개수본의 경우 다른 왕대는 개수본과 원본의 책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정조대 개수본은 원본에 비해 책 수가 현저히 적다. 완질이 남아 있는 원본의 연단위 분량은 최저 29책에서 최고 41책에 이르지만 개수본은 12책에서 27책에 불과하다. 원본을 기준으로 보면 왕대별 편찬 분량의 차이는 더욱 커지는 셈이다. 다만 정조 8년까지의 『일성록』은 한꺼번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량이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순조대 전반까지는 매년 20여책으로 편찬되었지만 순조 14년(1814)부터는 연간 15책 전후로 줄어들었다.

〈표 4〉 정조~철종대 식년시 開場, 出榜의 『일성록』 기사 수록 : 단계별(단위:회)

구분	단계	감시				문과					
		초시 개장	초시 출방	복시 개장	복시 출방	초시 개장	초시 출방	복시 개장	복시 출방	회시 개장	회시 출방
시행 횟수	29	29	32	32	29	29	32	32	32	32	32
기사 횟수	28	25	27	28	16	21	16	21	16	25	28
수록 비율	96.6%	86.2%	84.4%	87.5%	55.2%	72.4%	50.0%	65.6%	50.0%	78.1%	87.5%

시험 종류별로는 생원·진사시가 문과보다 수록 비율이 높다. 조선후기에 식년시 문과가 明經科로 불리며 경시되었던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¹⁸⁾ 그러나 문과 전시 기사의 수록 비율은 생원·진사시와 유사하며, 문과 복시의 최종 단계인 회시 출방 기사의 수록 비율도 생원·진사시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개장 기사와 출방 기사의 수록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주목된다. 위에서 확인되는 수록 비율은 시험의 중요도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과 초시, 복시, 회시의 개장 기사는 특히 수록 비율이 낮지만 단속적으로나마 기사가 수록된 것을 통해 여전히 시험의 전 과정을 기사화해야 한다는 의식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사의 문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개수본을 제외한 원본 『일성록』 가운데 식년시 기사가 등장하는 가장 이른 기록은 정조 10년(1786), 고종대 원본으로 가장 시기가 이른 것은 고종 10년(1873)의 기록이다. 정조 10년의 기록은 초기 『일성록』의 형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종 10년의 기록은 개수본을 편찬할 때의 준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두 해에는 전해에 실시한 초시에 대한 기사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정조 13년(1789)과 고종 13년(1876) 생원·진사시와 문과의 기사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선 고종 13년(1876) 식년시 기사의 기본 문형은 순조 27년(1827) 유본예가

18) 18세기 이후 식년시 문과의 경시 풍조에 대해서는 박현순, 앞의 책, 134-138면 참조.

편찬한 『일성록범례』와 정확히 일치한다. 시험 개장의 경우 ‘設+시험종류+于一二所【시관】’, 출방[방목입계]의 경우 감시초시는 ‘시험종류+一二所+進初試榜目’, 나머지는 ‘시험종류+一二所+進榜目’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전시의 경우 국왕이 친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생략되어 있고, 『일성록범례』에도 예시문이 없지만 다른 해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정조대의 기록과도 차이가 없다. 전시의 기재 방식은 정조대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에 비해 정조 13년의 기사 형식은 일부는 『일성록범례』와 동일하지만 상당부분 다른 면모를 보인다. 그 차이를 개장 기사, 출방 기사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일성록』의 정조 13년(1789)과 고종 13년(1876) 식년시 開場 기사 비교

절차	정조 13년(1789)	고종 13년(1876)
감시 초시	●設式年監試初試 ●行式年監試初試終場	●設監試初試于一二所【시관】
” 복시	●設式年監試覆試【시관】	●設監試覆試于一二所【시관】
문과 초시	●行式年文武科初試于一二所【시관】	×
” 복시	●行式年文武科覆試【시관】	●設式年文武科覆試于一二所【시관】
” 회시	●設式年文科會試【시관】	●設式年文科會試于丕闈堂【시관】
” 전시	●御仁政殿行文科殿試仍詣春塘臺行武科殿試【시관】 목 具翼善冠袞龍袍 乘輿 出協陽門 詣仁政殿 降輿 陞座 侍臣 先就拜位行禮 試官及應試人 各就拜位行禮訖 以觀豐閣爲銘題懸題訖 乘輿 出仁政門 由青陽門 詣春塘臺 降輿 陞座 試官及應射人 各就拜位 行禮 訖 仍命應射人應射	[命官 시행]

먼저 개장 기사는 시험의 시행을 나타내는 진술로, 『일성록범례』와 고종 13년 기사는 술어가 ‘設’자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정조 13년에는 ‘設’자와 ‘行’자를 혼용

하였다. 감시 초시 종장, 문무과 초시·복시에서는 ‘행’자를 사용하였고, 감시 초시, 감시 복시, 문과 회시는 ‘設’자를 사용하였다. 감시 초시 기사는 終場의 시행 기사도 있다. 다른 해의 경우 개장 기록이 초장일을 기준으로 삼은 것에 비추어 보면 종장일의 기록은 삭제했어야 하는 것으로 편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정조 13년 기사는 감시 초시에 시관 명단이 누락되었고, ‘于一二所’로 표현되는 시소는 문과 초시에만 수록되어 있다. 정조 13년의 기사는 그 내부에서도 상당히 일관성이 부족하다.

〈표 6〉『일성록』의 정조 13년(1789)과 고종 13년(1876) 식년시 出榜 기사 비교

절차	정조 13년(1789) 식년시	고종 13년(1876) 식년시
감시 초시	<p>● 監試初試一二所 進初終場榜目 ④一所 初場 幼學偰若淳 詩三中 居首 終場 幼學李喜明 義次上 居首 二所 初場 幼學韓羽達 詩三中 居首 終場 幼學權誨 疑三下 居首</p>	<p>● 監試一二所 進初試榜目 ④一所 幼學洪澤鶴 居首 二所 幼學鄭選朝 居首</p>
” 복시	<p>● 監試覆試出榜詣闕 ④生員 楊殷柱居首 進士 尹箕煥居首</p>	<p>● 式年監試覆試一二所進榜目 ④一所 幼學洪在豐 二所 幼學俞相漢 居首</p>
” 초시	<p>● 式年文科一二所進榜目 ④一所 幼學張漢豐 居首 二所 幼學朴鳴和 居首</p>	<p>● 式年文科東堂初試一二所進榜目 【시관】 ④一所 幼學鄭海舜 居首 二所 幼學成駱柱 居首</p>
” 복시	<p>● 式年文科覆試一二所進榜目 ④一所 幼學盧鏗 蔡趾永 文鳳岐 金圭夏 韓錫仁 金致礪 朴龍培 牟達謙 李東宇 趙昌濂 金乃默 具文行 金永弼 金尚礪 金宗赫 李宗直 二所 幼學金成珍 李泰熙 申義淳 尹行達 李嘆 鄭弼祚 趙夢璟 金元默 安敬默 鄭謙 宋濟康 金弼龍 金鳳舉 李志容 韓啓翼 姜時換</p>	×
” 회시	<p>● 式年文科會試出榜詣闕 ④幼學洪宗涉 居首</p>	<p>● 式年文科會試進榜目 ④取幼學朴魯參等三十二人</p>

출방[방목 입계] 기사도 고종 13년의 경우는 『일성록범례』를 그대로 따랐다. 따라서 감시초시는 ‘進初試榜目’, 다른 시험은 ‘進榜目’으로 통일되어 있다. 이에 비해 정조 13년 기사는 ‘進初終場榜目’, ‘進榜目’, ‘出榜詣闕’이 혼용되어 있다.

출방 기사의 目도 고종 13년 기사는 『일성록범례』와 동일한 형식이다. 초시·복시는 1소와 2소의 居首를 기록하고, 문과 회시는 ‘取幼學○○○等三十三人’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정조 13년의 기사는 시험마다 그 형식이 다르다. 감시초시는 거수를 밝힌 점은 동일하지만 初場과 終場, 곧 진사시와 생원시를 구분하고, 시험 과목과 성적도 아울러 기재하였다. 감시 복시도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누었다. 문과의 경우 복시는 1소와 2소에서 선발한 각 16명의 전체 명단을 수록하였고, 회시에서는 거수만을 밝혔다.

정조 13년의 식년시 기사는 『일성록범례』와 이에 준한 고종 13년의 기사에 비하면 정확성을 추구하고 사실을 풍부하게 기록하였다. 그러나 기록 형식은 여러 방식이 혼용되어 일관성이 부족하다. 반대로 고종 13년의 기사는 『일성록범례』를 준용하여 전체적인 통일성을 높지만 기록 자체는 소략해지고 형식화된 면이 있다.

실제 정조대 식년시 기사의 작성 방식은 정조 13년의 사례보다도 훨씬 다양하다. 하지만 문과 복시 제술시험, 곧 ‘회시’, ‘생회시’의 사례를 제외하면 이후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문형들이 이미 정조대에도 확인된다. 즉, 『일성록범례』와 고종 13년의 기재방식은 정조대에 보이는 다양한 문형들 가운데 특정 문형을 선택하여 통일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렇다면 문형이 통일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우선 초시와 복시에서 ‘設’자 대신 ‘行’자를 쓴 사례는 식년시의 경우 총 4회만 확인된다. 이 중 세 사례가 위에서 본 정조 13년의 기사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한 사례는 정조 19년(1795) 문과 초시 기사에 보인다. 그러나 이후에는 초시나 복시·회시에서 ‘행’자를 쓴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술어가 ‘설’자로 통일된 것이다.

전시의 경우 대부분 정조 13년의 사례와 같이 ‘御+시험장소+行+시험종류’와 같은 형식이 일반적이었다. 정조 14년(1790) 증광시에서는 ‘御+시험장소+設+시험종류’의 형식으로 기재하였으나 이후에는 이런 사례도 보이지 않는다.

간혹 전시를 ‘行+시험종류+于+시험장소’나 ‘設+시험종류+于+시험장소’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다. 이 중 술어를 設字로 쓴 경우는 국왕이 친립하지 않고 命官이 대신 시험을 주관한 경우를 나타낸다.¹⁹⁾ 술어를 行字로 쓴 경우는 정

조대 한차례, 순조대 두차례의 사례가 보이는데, 정조대에는 정조가 친립한 시험, 순조대에는 명관이 대신한 시험으로 일관성은 없다.²⁰⁾ 그러나 이런 사례도 순조 14년(1814)을 끝으로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국왕이 친립한 경우는 ‘行’, 그렇지 않은 경우는 ‘設’로 술어를 기재하는 방식을 고수한 것이다.²¹⁾ ‘설’과 ‘행’의 구분은 초시 복시에서는 정조 19년, 문과 전시에서는 순조 14년 이후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방목 입계를 ‘出榜’으로 표현한 사례는 정조 22년(1798)까지 총 10회가 확인되는데, 그 이후에는 개수본인 고종 4년 감시 복시의 사례에서만 한차례 보인다.²²⁾ 따라서 ‘출방’이라는 표현도 정조대에만 사용되었고, 이후에는 ‘進榜目’으로 통일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일성록범례』에는 감시 초시는 ‘進初試榜目’, 나머지는 ‘進榜目’으로 술부를 제시하였는데, 간혹 혼용되는 사례가 있다.

居首의 기재방식은 감시는 생원시와 진사시의 구분 여부, 문과 복시와 회시는 강경시와 생획시의 기재형식이 그 핵심적인 차이다.

감시의 경우 정조대에는 모두 생원시와 진사시를 구분하였다. 1소와 2소의 거수 한 사람씩만 기재한 사례는 개수본에서만 보인다. 순조대 이후의 사례는 초시와 복시가 다른 경향을 보인다. 초시는 대부분 『일성록범례』와 같은 형식으로 1소와 2소의 거수만을 기재하였고, 예외적으로 순조 22년과 고종 28년에만 생원시·진사시를 구분하였다.²³⁾ 복시의 경우 순조 10년(1810) 식년시까지는 생원시와 진사시

19) 『일성록』 순조 16년(1816) 10월 10일 : 같은 책, 현종 1년(1835) 10월 13일 : 같은 책, 현종 14년(1848) 5월 30일 : 같은 책, 고종 25년(1888) 4월 19일 : 같은 책, 철종 1년(1850) 4월 28일 : 같은 책, 고종 31년(1894) 5월 15일.

20) 『일성록』 정조 16년(1792) 3월 13일 “行文武科殿試于仁政殿及春塘臺” : 같은 책, 순조 13년(1813) 10월 22일 “行文武科殿試” : 같은 책, 순조 14년(1814) 4월 17일 “行式年文武科殿試于春塘臺”

21) 친립 여부는 국왕의 입장 과정을 서술한 儀注의 여부로도 확인 가능하다. 또 시험에 앞서 친립을 지시하거나 命官을 지정하는 왕명을 통해서도 친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조실록』의 전시 시행 기록은 전반에는 ‘設’자, 후반에는 ‘行’자를 주로 사용하였다.

22) 『일성록』 고종 4년(1867) 2월 23일.

23) 순조 22년에는 시소별로 생원시 진사시 거수를 나누어 기재하였다. 고종 28년(1891)에는 시소별로 4명의 거수를 기재하였는데, 과목별로 나누어 진사시의 詩와 賦, 생원시의 疑와 義의 거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를 구분하였으며, 그 후로는 1소와 2소의 구분이 주를 이룬다.²⁴⁾ 즉, 복시의 경우 초시보다는 늦게까지 생원시와 진사시를 구분하려고 하였지만 역시 1소와 2소를 구분하는 방식이 주류가 되었다.

문과 초시의 경우 처음부터 1소와 2소의 거수를 기재하는 방식이 고수되었다. 그러나 복시와 회시의 경우 고종대까지도 형식이 통일되지 않았다. 정조대 4개 시 년의 ‘복시’와 ‘회시’ 출방 기사의 目은 아래 표와 같이 모두 형식이 다르다. 순조 대 이후에는 ‘복시’는 거수의 직역과 성명만 기재하였고, ‘회시’의 경우에는 정조 13년(1789)의 사례에 보이는 ‘幼學○○○居首’와 같이 거수만 기재하는 방식과 『일 성록범례』에 보이는 ‘取幼學○○○等三十三人’의 방식이 혼용되다가 고종대부터는 후자만 사용되었다. 이 부분의 기사에서 『일성록범례』 형식이 정착되는 것은 고종 대의 일이다.

〈표 7〉 정조대 『일성록』의 식년시 문과 ‘복시’·‘회시’ 출방 기사

구분	문과 복시(강경)	문과 회시(제술, 生劃試)
정조 10년(1786)	<p>● 式年文科覆試出榜 ⑩ 一所幼學金敬吾十六分居首 二所幼學白慶楷十六分居首</p>	<p>● 式年文科會試出榜詣闈 ⑩ 一等[명단]二等[명단]三等[명단]</p>
정조 13년(1789)	<p>● 式年文科覆試一二所進榜目 ⑩ 一所 [16명 명단] 二所 [16명 명단]</p>	<p>● 式年文科會試出榜詣闈 ⑩ 幼學洪宗涉居首</p>
정조 16년(1792)	x	<p>● 式年文科會試試官進榜目 ⑩ 取三十二人幼學鄭渤居首</p>
정조 22년(1798)	<p>● 式年文科一二所出榜 ⑩ 一所幼學金致德居首 二所幼學朴慶九 居首</p>	<p>● 文科覆試生畫出榜 ⑩ 居首進士朴時源</p>

24) 예외적인 사례도 보인다. 순조 22년(1822), 현종 3년(1837), 현종 6년(1840), 현종 9년 (1843)에는 생원시와 진사시를 구분하였으며, 고종 28년(1891)에는 1소에는 생원 거수 2 명, 2소에는 진사 거수 2명을 기재하였다. 생원·진사시 복시는 1소와 2소로 나누어 초장에는 진사시, 종장에는 생원시를 보았으며, 최종 등위를 매길 때는 1소와 2소를 번갈아가며 배치하였다. 따라서 1소에서 생원 거수 2명, 2소에서 진사 거수 2명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1소와 2소로 나누던 형식에 생원·진사의 구분을 더하면서 발생한 오기로 보인다.

문과 복시와 회시는 시험 명칭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정조대에는 강경은 주로 ‘覆試’, 제술은 ‘會試’ 또는 ‘生劃試’로 지칭하였다. 이 구분은 순조대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회시보다는 ‘생회시’라는 용어가 선호되었다. 그러나 순조 22년(1822)에 ‘복시’의 표현을 보다 구체화한 ‘覆試講經’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래 현종·철종대에는 ‘복시강경’과 ‘생회시’ 또는 ‘복시강경’과 ‘회시’, ‘복시’와 ‘회시’ 등이 혼용되었다. 이후 고종대에는 다시 ‘覆試’와 ‘會試’의 구분이 선호되었다. 고종 11년 소실분을 개수할 때 『일성록법례』의 형식을 기준으로 삼았던 탓인 듯하다.

〈표 8〉 정조대 『일성록』의 식년시 문과 복시·회시 기사

연도	문과 복시(강경)	문과 회시(제술, 生劃試)	
정조 10년 (1786)	● 設式年文武科會試 【시관】 ● 式年文科覆試出榜 ④一所幼學金敬吾十六分居首 二所幼學白慶楷十六分居首	● 設式年文科生劃試 【시관】 ● 式年文科會試出榜 詣闈 ④一等 [명단] 二等 [명단] 三等 [명단]	
정조 13년 (1789)	● 行式年文武科覆試 【시관】 강 式年文科覆試一二所進榜目 ④ 一所 [16명 명단] 二所 [16명 명단]	● 設式年文科會試 【시관】 ● 式年文科會試出榜 詣闈 ④ 幼學洪宗涉居首	
정조 16년 (1792)	● 設式年文武科覆試 【시관】 -	● 設式年文科生劃試 ● 式年文科會試試官進榜目 ④ 取三十二人幼學鄭渤海居首	
정조 22년 (1798)	● 設東堂文武科覆試	● 式年文科一二所出榜 ④ 一所幼學金致德居首 二所幼學朴慶九居首	● 設式年文科生劃試 于泮宮 【시관】 ● 文科覆試生畫出榜 ④ 居首進士朴時源

『일성록』 식년시 기사를 보면 대개 순조대 전반까지 『일성록법례』와 같이 문형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이광규가 『일성록법례』를 편찬한 시기다. 다만 식년시 문과 복시와 회시는 여러 방식의 표현이 활용되다가 고종대에 이르러서야 『일성록법례』의 형식으로 통일되었다. 그 시점은 『일성록』의 개수가 이루어진 고종 11년(1874)으로 서만보가 『일성록법례』를 증보한 시점이다. 즉, 『일성록』 과거

기사는 이광규와 서만보의 『일성록범례』 편찬과 증보를 통해 문형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고종 11년의 『일성록』 개수도 『일성록범례』를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개수본 『일성록』은 『일성록범례』와 동일한 형식으로 기사가 구성되어 있다.

2) 성균관 과시 기사의 수록 양상과 문형 변화

성균관 과시는 그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應製처럼 정례화되지 않은 시험도 많아 『일성록』에 어느 정도의 시험 시행 사실을 수록하였는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정례화된 절일제와 춘추도기, 황감제의 경우이다. 이 중 人日製의 사례를 보면 정조대 24년간 22회, 순조대 34년간 27회, 현종대 15년간 13회, 철종대 14년간 12회, 고종대 31년간 28회, 총 118년간 102회의 기사가 확인된다. 그리고, 기록이 누락된 16년은 『승정원일기』나 실록에서도 시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외에 삼일제, 칠일제, 구일제, 춘추도기, 황감제의 경우에도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재위년에 근접한 횟수가 확인된다. 따라서 성균관 시험도 모든 시험의 시행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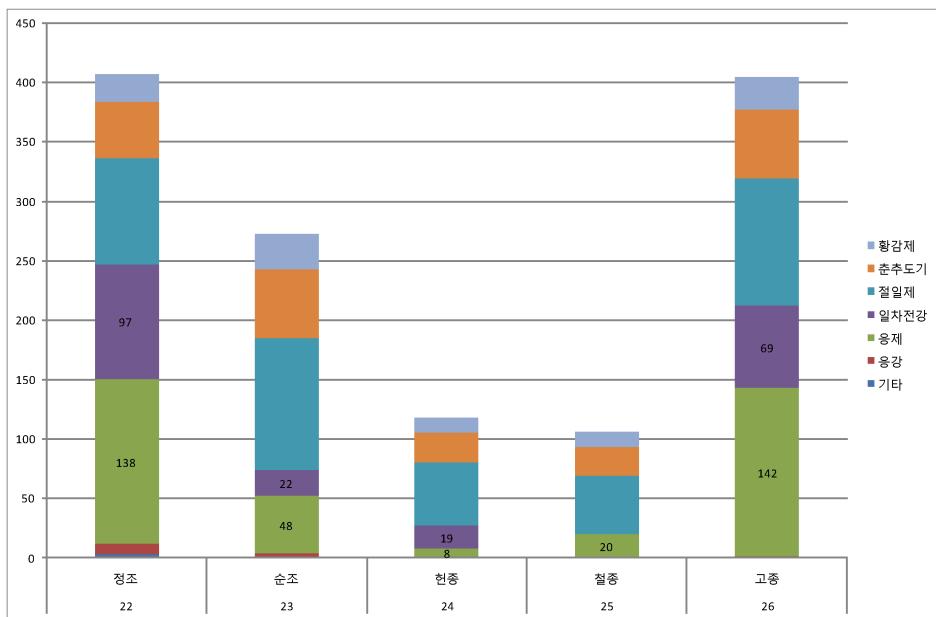
정조대부터 고종대까지 성균관을 매개로 시행된 시험의 종류와 시험 횟수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²⁵⁾

그림에서 위쪽에 위치한 황감제, 춘추도기와 절일제 등 정례화된 시험은 정조대부터 고종대까지 거의 매년 꾸준히 시행되었다. 그림에서 확인되는 차이는 재위년수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아래쪽의 日次殿講과 應製는 정조·고종대와 순조·현종·철종대가 확연하게 대비된다.

이 차이는 정조 사후 거의 실시하지 못했던 일차전강과 응제를 고종대에 다시 복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성균관 과시의 시행 추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⁶⁾

25) 유생응제는 성균관 시험과 그 밖의 시험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외방별과나 외방응제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응제에 포함시켰다.

26) 정조 사후 일차전강과 상재생 응제, 또 부정기적으로 시행되던 응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순조, 현종, 철종도 이를 복구하려고 시도한 적은 있지만 번번히 좌절되었다. 그러나



〈그림 1〉 정조~고종대 왕대별 성균관 과시 시행 횟수

성균관 과시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시험 절차는 거의 유사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험 종류보다는 국왕의 친림 여부가 기사의 구성 방식을 결정하였다. 아래에서는 인일제의 사례를 통해 성균관 과시 시행 기사의 문형 변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書題를 보낸 경우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고종대의 기사는 『일성록범례』와 형식이 일치한다. 하지만 정조대 기사는 강의 문형은 동일하지만 목의 기사 구성이 다르다. 즉, 정조대 기사는 어제, 왕명순으로 기사를 구성하였고, 고종대 기사는 왕명, 어제 순으로 순서가 반대이다. 그리고 고종대에는 세주로 입문수와 수권수를 기재하였다. 이 부분은 정조대 후반부터 새로 추가된 부분이다.

고종은 재위 12년(1875) 10월부터 일차전강을 복구하였고, 재위 11년(1874)부터 館學儒生應製라는 명목으로 응제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일차전강과 응제는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 매년 여러 차례씩 꾸준히 시행되었다.

〈표 9〉 『일성록』 인일제 시행 기사의 비교 1 : 국왕이 書題를 보낸 경우

정조 10년(1787) 1월 9일	고종 10년(1873) 1월 6일
<p>● 設入日製于泮宮 ⑩ 以儒道爲策題 命弘文提學李命植·同副承旨李家煥 詣泮宮試取以來</p>	<p>● 設入日製于泮宮 ⑩ 教曰 右承旨 持此御題 與弘文提學偕往泮宮試取以來 以擬東漢群臣賀立春之日下寬大書爲表題 【入門六百五十人收券三百三十張 仍行科次】</p>

위의 사례와 달리 정조대 인일제 기사에서는 식년시의 사례가 그랬던 것처럼 ‘행’자와 ‘설’자를 혼용하였다. 그러나 순조 18년을 마지막으로 ‘행’자를 사용하는 사례는 사라진다. 그리고, 어제와 왕명의 순서가 바뀐 사례는 순조 9년에 처음 등장하여 그대로 정착되었다.²⁷⁾

〈표 10〉 『일성록』 인일제 시행 기사의 비교 2 : 국왕이 친림한 경우

정조 23년(1799) 4월 3일	고종 18년(1881) 2월 24일
<p>● 御春塘臺行[…]人日製[…]【시관】 ⑩ 具翼善冠·袞龍袍 陞座 試官率應試文臣及儒生入庭行禮訖[…] 以本朝太學生等謝賜銀盃爲箋題 萬川明月主人翁爲賦題</p>	<p>● 御春塘臺行人日製【시관】 ⑩ 具翼善冠·袞龍袍 乘輿 出協陽門 入青陽門 詣春塘臺 降輿 陞座 試官以下行禮訖 以命田舍東郊爲詩題 【入門一千四百三十六人收券七百五十四張】 仍行科次</p>

친림한 경우에는 정조대부터 시종일관 綱에서 ‘御○○○行○○○’ 형식의 문형을 사용하고 目에서 친림 의주와 시제를 기재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이후에는 入門數와 收券數가 추가되는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성균관 과시의 기재 형식에서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입문수와 수권수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이 중 수권수는 정조 19년(1795)과 정조 20년(1796) 성균관에 다녀온 승지의 보고 중에 보이는데, 정조 22년(1798)에는 입문수와 수권수가

27) 『일성록』 순조 9년(1809) 1월 12일.

함께 등장한다.²⁸⁾ 이어 정조 23년(1799)에는 科次 기사의 세주로 입문수와 수권수를 기재하였으며,²⁹⁾ 정조 24년(1800) 친립 인일제에는 어제 다음으로 기재 위치가 변경되었다.³⁰⁾ 이 방식이 『일성록범례』에도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다른 성균관 과시나 정시·알성시의 경우에도 대략 정조 18년 이후로 입문수와 수권수가 기재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성균관과시는 처음에는 수권수만 기재하다가 정조 22년(1798) 이후에는 입문수와 수권수를 모두 기재하는 양상이 일반화되었다. 이 형식이 그대로 준용되어 『일성록범례』에도 수록된 것이다.³¹⁾ 정조는 재위 21년(1797) 지방에서 시행한 향시의 결과 보고에도 입문수와 수권수를 기재하게 하였다. 입문수와 수권수가 『일성록』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된 것도 이즈음이다.

성균관 과시의 과차는 시행 기사의 目에 기재하기도 하고, 별도로 綱을 세워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綱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을 뿐 목의 내용이나 형식은 차이가 없다. 이 점은 정조대와 고종대 사이에도 차이가 없다.

다만 綱의 경우 정조대에는 ‘科次○○○試券’이라는 문형을 주로 사용하였고, 고종대에는 ‘行○○○科次’라는 문형을 사용하였다. 인일제 기사에서 ‘行科次’라는 문형을 綱에 사용한 것은 순조 6년에 처음 보인다.³²⁾ 그러나 황감제 기사에서는 정조 14년에 이미 동일한 문형이 등장하며,³³⁾ 目에서 사용한 사례는 그 이전에도 보

28) 『일성록』 정조 19년(1795) 1월 25일 “晚秀捧試券二千一百七十張以入” ; 같은 책, 정조 20년(1796) 1월 7일 “承旨黃昇源啓言 臣與弘文提學具庠 偕往泮官試取人日製儒生 則收券爲五百十二張 故捧入” ; 같은 책, 정조 22년(1798) 1월 9일 “政院 以人日製儒生收券一百十張 · 入門一百三十三人啓”

29) 『일성록』 정조 23년(1799) 4월 3일 “科次文臣製述及人日製試券于便殿人日製 【入門七千八百二十三人 收券二千三百四十三張】”

30) 『일성록』 정조 24년(1800) 3월 22일 “以鑄京辟雍自西自東自南自北爲賦題 限申時 【入門十萬三千五百七十九人收券三萬二千八百八十四張】”

31) 『승정원일기』 정조 21년 7월 27일(갑오) “傳于李海愚曰 京外何異 此後鄉試 左右道榜目啓本 入門數爻 收券數爻 後錄狀聞 而武所捧單數爻 亦依京試所例 榜目後錄狀聞事 令廟堂行會諸道 亦令禮·兵曹知悉”

32) 『일성록』 순조 6년(1806) 1월 18일.

33) 『일성록』 정조 14년(1790) 9월 7일 “行菊製科次于誠正閣”

인다.³⁴⁾ 그러나 그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비해 순조대 당대본인 순조 6년 기사부터는 ‘行科次’의 형식이 일반화되고, ‘科次○○○試券’의 문형은 응제나 외방 유생 응제 등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되었다. 그마저도 순조 23년 제주유생시취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³⁵⁾ ‘行○○○科次’의 문형도 순조대 전반을 거치며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표 11〉 『일성록』 인일제 科次 기사의 비교

정조대	고종대
정조 11년(1787) 1월 22일 ⑩ 教曰人日製大輪次表居首三中生員柳師模賦居首 三中進士金翰東并直赴殿試[…] 入格人皆令再明日來待	고종 10년(1873) 1월 6일 ⑩ 教曰人日製表居首三下幼學沈鎮圭之次三下幼學 鄭寅協竝直赴殿試[…] 又教曰入格儒生明日待令
정조 18년(1794) 1월 7일 ● 科次人日製試券 入格儒生施賞有差 ⑩ 教曰人日製居首進士沈厚鎮直赴會試[…] 仍命入格儒生明日待令	고종 12년(1875) 1월 16일 ● 行人日製科次 ⑩ 教曰人日製賦居首三下幼學李憲植直赴殿試[…] 教曰入格儒生明日待令

이상 정조-고종대 『일성록』 성균관 과시 기사의 문형은 정조대 후반부터 순조대 전반 사이에 통일되었다. 식년시보다 앞서 형식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래도 시험 절차가 간단하다는 데서 비롯된 듯하다. 그리고, 식년시와 마찬가지로 정조대에 사용된 문형이 그 기초가 되었음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순조대 전반 이광규와 유본예의 『일성록범례』 편찬은 정조대에 사용된 여러 문형들 가운데 특정한 문형을 선정하고, 문형들 간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형식이 19세기를 관통한 셈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시점에서 『일성록』의 기사 분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과거 기사는 그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거의 모든 시험의 전 과정을 기사화하였다. 그 결과 『일성록』은 과거 시행에 관한 한 가

34) 『일성록』 정조 12년(1788) 7월 25일 “仍行科次于誠正閣”

35) 『일성록』 순조 23년(1823) 2월 24일 “科次濟州儒生試券”

장 정확하고 정보가 풍부한 자료로 남게 되었다. 『승정원일기』나 실록에도 과거 기사가 빠짐없이 실려 있는 것을 보면 과거 자체가 지니는 사안의 중요성이 기사의 지속성을 가져온 원천이었다고 보인다.

기사의 문형이 고정되어 간편하게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것도 기록이 지속되는 데 일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고종대에는 기사 중에 공란이 등장하여 기사가 형식화된 면모도 보인다.³⁶⁾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여전히 과거 기사는 『일성록』 편찬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4. 『일성록』과 『조선왕조실록』 과거 시행 기사의 비교

정조대 『일성록』의 편찬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지만 실록의 편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일성록범례』를 편찬한 유본예는 『정조실록』의 편찬에 『일성록』이 주요 근거가 되었다고 자격하였으며, 『정조실록』의 편찬 때 활용된 「찬수청범례」는 『일성록』의 범례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³⁷⁾

『정조실록』은 순조 1년 8월부터 편찬을 시작하여 12월까지 時政記와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산절하여 기사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찬수를 시작할 무렵 대제학 李晚秀가 정조대의 사적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일성록』이라고 주장하며, 실록 편찬에 『일성록』을 함께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이어진 찬수작업 때부터 『일성록』을 함께 이용하였고, 27개조항으로 된 「찬수청범례」와 「교정청범례」도 새로 작성하였다.³⁸⁾ 『일성록』이 『정조실록』 편찬의 주요 자료가 되었음은

36) 실제 고종 17년(1880)부터 고종 22년(1885)의 과차 기사에는 ‘行科次于’에 그치고 장소가 기재되지 않은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37) 오항녕, 2004 「조선후기 국사체계(國史體系)의 변동에 관한 시론 : 실록(實錄)에서 일성록(日省錄)으로」, 『역사와현실』 52, 279~285면.

38) 최연식, 2005 「純祖初 《正宗大王實錄》의 편찬과 《正宗大王實錄廳儀軌》, 『正祖大王實錄廳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 6-12면.

분명하다.

아래에서는 『일성록』과거 기사와 정조~철종대 실록의 과거 기사를 비교 검토하여 두 기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조실록』의 「찬수청범례」에는 과거 기사의 수록에 대하여 각년 등과는 ‘取某等幾人’이라고 쓴다고 되어 있다.³⁹⁾ 이 조항은 현재 찬수범례가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실록인 『인조실록』의 찬수범례에도 그대로 확인되며,⁴⁰⁾ 이후의 실록에서도 그대로 준용되었다. 「찬수청범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정조실록』과 그 이전의 실록에 실린 과거 기사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다. 즉, 이전의 실록은 최종단계에 해당되는 문무과 전시와 생원·진사시 복시 기사만 실려 있지만 『정조실록』에는 문무과의 초시와 회시, 생원·진사시의 초시 기사도 함께 실려 있다. 다만 『일성록』과 달리 출방 기사는 생략하였고, 식년시 문과 복시 기사는 강경 기사를 ‘복시’ 기사로 수록하고, 제술, 곧 생획시 기사는 생략하였다. 『순조실록』 역시 『정조실록』과 동일한 방식을 따랐다.

『정조실록』, 『순조실록』의 과거 시행 기사는 『일성록』에 비하면 소략하지만 『영조실록』과 비교하면 내용이 훨씬 풍부하다. 이런 결과는 『일성록』을 활용할 수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곧, 『일성록』의 편찬은 실록에서 과거 기사가 풍부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표 12〉 『일성록』과 영조~철종대 실록의 식년시 기사 수록 현황

기사구분 자료명	일성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순조실록	현종실록	철종실록
감시초시 개장	○	×	○	○	×	×
” 출방	○	×	×	×	×	×
감시복시 개장	○	○	○	○	×	×
” 출방	○	×	×	×	○	○

39) 서울대학교 규장각 간, 2005 『正宗大王實錄廳儀軌』

40)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奎 14158) 「實錄纂修凡例」 “各年登科人 書取某等幾人”

문과초시 개장	○	×	○	○	×	×
" 출방	○	×	×	×	×	×
문과복시 개장	○	×	○	○	×	×
" 출방	○	×	×	×	○	○
문과회시 개장	○	×	×	×	×	×
" 출방	○	×	×	×	○	○
문과전시 개장·출방	○	○	○	○	○	○

『현종실록』과 『철종실록』의 과거기사는 『정조실록』 및 『순조실록』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초시 기사를 제외하였다. 생원·진사시는 복시, 문과는 복시와 전시의 기사만 수록한 것이다. 그리고, 생원진사시와 문과 복시 기사도 개장이 아닌 출방을 기준으로 삼았고, 식년시 복시의 경우 강경시험과 제술시험의 출방 기사를 모두 수록하였다. 복시의 개장 기사를 출방 기사로 대체한 것은 현종대·철종대 『일성록』 기사에서 유독 식년시 문과 복시 강경 시험의 개장 기사가 누락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⁴¹⁾

〈표 13〉 정조~철종대 식년시 감시 초시 기사의 비교

차료 날짜	일성록	실록	비고
정조 13년 2월 16일	● 設式年監試覆試 【시관】	設監試覆試	실록 기사는 출방일인 2월 20일에 수록
순조 7년 2월 22일	● 設監試覆試初場于一二所 【시관】	設式年監試覆試	
현종 6년 2월 22일	● 監試覆試一二所進榜目 ③ 生員居首幼學李敏老 進士 居首幼學金世鎬	監試覆試 李敏老·金世鎬 居首	
철종 3년 2월 27일	● 監試覆試一二所進榜目 ③ 一所幼學申星求居首 二所幼學金有冕居首	監試覆試一二所 進榜目 一所幼學申星求 二所幼 學金有冕居首	

41) 『일성록』에서 강경 시험의 기록이 누락된 경우는 순조 25년·28년·31년·34년 식년시 기록에도 보인다. 『순조실록』에서는 순조 25년과 28년의 복시 기록이 누락되어 있고, 순조 31년과 34년에는 개장 기사가 있다. 현종대·철종대 『일성록』에서는 현종 12년과 현종 15년의 식년시 때만 복시 강경 시행 기록이 보인다.

실록 기사의 문형은 위에서 보듯 『일성록』의 기사를 발췌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성록』 기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일성록』과 『정조실록』의 기사를 비교해보면 『일성록』에 ‘設’과 ‘行’이 혼용되던 것을 『정조실록』에서는 초시와 복시는 ‘設’, 국왕이 친립한 전시는 ‘行’으로 통일하였고, 또 식년시 감시 초시는 ‘감시초시’로만 기재된 경우 ‘식년감시초시’로 교정한 사례들이 있다. 비록 전체적인 통일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정조실록』을 편찬할 때는 『일성록』의 문형을 활용하면서도 보다 통일성을 기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순조실록』에서는 그 일관성이 더욱 강화되어 있다.

『현종실록』, 『철종실록』은 출방일을 기준으로 기사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조실록』·『순조실록』과는 기사 구성이 다르다. 현종·철종대 『일성록』은 『일성록범례』를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문형이 거의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복시 강경과 제술시험의 명칭은 『일성록범례』와 차이가 있다. 즉, 『일성록범례』에는 각각 ‘복시’와 ‘회시’로 칭하고 있지만, 『일성록』에서는 ‘복시강경’과 ‘강경’, ‘생회시’, ‘회시’가 혼용되었다.

『현종실록』과 『철종실록』에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기사를 재편집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종실록』과 『철종실록』, 『일성록』의 기사를 뽑아 예시한 것이 아래 표이다.

우선 『현종실록』에서는 강에서 시험 종류와 선발 결과를 간단히 기록하였다. “式年文科覆試講經 一所○○○ 二所○○○居首”, “式年文科會試 取○○○等三十三人”과 같은 방식이다. 여기서 시험종류는 강경시험은 ‘式年文科覆試講經’ 또는 ‘文科講經’, 제술시험은 ‘東堂生劃試’, ‘式年文科會試’ 등으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성록』의 기록도 마찬가지다. 즉, 『일성록』에 사용된 명칭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또 ‘取○○○等三十三人’의 형식을 취한 다른 시험과 달리 현종 3년의 제술시험 실록 기사가 ‘金在瓘居首’라고 되어 있는 것이나⁴²⁾ 현종 15년(1849) 제술 시험 기사

42) 『현종실록』 권4, 현종 3년 4월 8일(을묘) “東堂生劃試 金在瓘居首” : 『일성록』 현종 3년 4월 8일 “東堂生劃試進榜目 幼學金在瓘居首”

가 ‘생회시’로 기재된 다른 시험과 달리 ‘設式年文科會試’라고 되어 있는 것도⁴³⁾ 모두 『일성록』의 기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종실록』의 과거기사가 『일성록』 기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그대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철종실록』은 ‘進榜目’이라는 술어까지 그대로 수록하여 문형도 『일성록』과 동일하다. 대신 시험의 명칭은 강경시험은 ‘式年文科覆試’, 제술시험은 ‘式年文科會試’로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철종실록』 기사에는 ‘복시’ 기사의 며칠 후에 다시 ‘회시’ 기사가 등장한다. 복시와 회시가 동의어라는 점에서 보면 혼란스러운 방식이지만 『철종실록』 내에서는 일관된 원칙 하에 작성된 기사이다.

〈표 14〉 실록과 『일성록』의 현종 6년과 철종 6년의 식년시 복시 기사 비교

시험종류 연도 자료	문과복시 강경		문과복시 제술	
	실록	일성록	실록	일성록
현종 6 (1840)	3월 25일	3월 25일	3월 29일	3월 29일
	式年文科覆試講經 一所孫相馴 二所李在立居首	● 式年文科覆試講經 一二所進榜目 ① 一所幼學孫相馴居首 二所幼學李在立居首	式年文科會試 取鄭駿容等三十三人	● 式年文科會試進榜目 ① 取幼學鄭駿容等三十三人
철종 6 (1855)	3월 27일	3월 27일/3월 28일	3월 30일	3월 30일
	式年文科覆試一二所 進榜目 一所幼學趙光濟 二所幼學金壽仁居首	● 式年文科覆試一所 進榜目 ① 幼學趙光濟居首 ● 式年文科覆試二所 進榜目 ① 幼學金壽仁居首	行式年文科會試 取幼學宋秉觀等三十三人	● 設式年文科生割試 ① 取幼學宋秉觀

『현종실록』과 『철종실록』은 『정조실록』·『순조실록』과 달리 초시 기사를 제외하였지만 여전히 『영조실록』에 비하면 기사가 풍부한 편이다. 그리고, 용어나 술어

43) 『현종실록』 권16, 현종 15년 4월 4일(임인) “設式年文科會試 取吳慶履等三十三人” : 『일성록』 현종 15년 4월 4일 “設式年文科會試 取幼學吳慶履等三十三人”

를 재편집한 경우가 많았던 『정조실록』과 『순조실록』에 비해 『일성록』의 기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면모가 강했다. 여전히 『일성록』의 과거 시행 기사는 실록 편찬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고, 그 의존도는 더 높아진 셈이다.

『정조실록』을 편찬할 때는 「찬수청범례」를 개정했을 뿐 아니라 별도의 「校正凡例」 11개 조항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殿試, 節製, 殿講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초계문신의 親試와 殿試와 殿講은 모두 ‘行○○科’라고 쓴다.[抄啓親試殿試殿講皆曰行某科]
- ② 殿講과 국왕이 장소를 옮긴 경우는 모두 먼저 御○○殿이라고 쓴다.[殿講及移次皆先書御某殿]
- ③ 절제는 거수인만 쓴다.[節製只書居首人]
- ④ 절제는 단지 ‘設某製于泮宮’이라고 이르고, 급제를 내린 사람을 기록하고, 그 나머지는 쓰지 않는다. 특별히 전교를 내린 경우나 특이한 일의 경우에는 쓴다.[節製則只曰設某製于泮宮賜第人載錄其餘勿書有別下傳教或特異之事實則書]

①과 ②는 국왕이 친림하는 경우의 문형에 대한 것이다. ①은 초계문신 친시, 과거의 전시, 유생 전강 등 국왕이 친림하는 시험은 술어를 ‘行’으로 쓴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정조실록』을 편찬할 때 ‘設’자와 ‘行’자의 쓰임을 분명히 구분하여 ‘행’으로 통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는 국왕이 친림하는 경우 장소의 이동을 ‘御’자로 기술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御○○殿 行某科’, 즉, ‘御仁政殿 行增廣文科殿試’와 같은 형식의 문장이 구성된다. 『영조실록』과 정조대 『일성록』에서는 ‘行’자 대신 ‘設’자를 쓴 경우들이 보이지만 『정조실록』을 편찬할 때는 이를 ‘行’자로 교정하였다.⁴⁴⁾ 이와 같은 원칙은 예외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성록』 기사에도 견지되던 방식이었다. 즉, 『정조실록』의 「교정청범례」에 보이는 두 원칙은 『일성록』을 편찬과정에서 수립된 것을 실록의 교정단계에서 재차 적용하여 문

44) 예를 들어 정조 14년(1790) 9월 20일 증광문과 전시를 시행했을 때 『일성록』 기사는 “御仁政殿設增廣文科殿試”라고 되어 있는데, 『정조실록』에는 “御仁政殿 行增廣文科殿試”로 ‘설’자를 ‘행’자로 바꾸었다.

형의 통일을 기한 것이다.

③과 ④는 節製에 대한 규정이다. 먼저 ④는 국왕이 친립하지 않고 書題를 보낸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設某製于泮宮’의 형식으로 시행기사를 쓰고, 급제자의 이름을 뒤에 싣는다는 내용이다. 실제 기사는 “設柑製于泮宮 居首 進士李貞運 直赴殿試”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다.⁴⁵⁾ 급제를 내리지 않는 경우 ‘居首’이하의 기록은 생략되었다.

이 중 ‘設○○○于泮宮’이라는 문형은 『일성록』을 편찬할 때도 적용된 방식이다. 이 역시 『일성록』의 편찬 방식을 따른 원칙이었던 것이다. 다만 『일성록』에서는 급제 외에도 직부회시, 紿分, 상물 시상 등도 모두 기록하였는데, 『정조실록』에서 는 직부전시만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모두 생략하도록 하였다. ③ 규정은 급제자보다 폭이 넓은 入格者들의 수록 방식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④의 조항, 즉 급제자만 기재한다는 조항과 상충된다. 『정조실록』에서 직부회시 이하의 시상 내역은 모두 생략한 것을 보면 이 조항은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정조~철종대 실록은 수록 범위나 기본 문형, 용어 등을 통해 『일성록』의 기사를 토대로 과거 시행 기사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유한 편집 원칙을 세워 『일성록』의 기사를 벌췌하고, 문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정조대 이후 실록의 과거 기사는 『영조실록』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문형이나 용어 사용도 보다 통일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정조실록』의 편찬 경험은 이후 『일성록』 과거 기사의 통일성이 제고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5. 맷음말

조선에서는 과거제를 시행한 502년 동안 실록과 『승정원일기』에 그 사실을 기

45)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 11월 3일(기유).

록하였다. 그러나 두 연대기는 최종 단계의 시험이나 국왕이 친립한 시험을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시험의 전단계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한계는 정조대 『일성록』의 편찬을 통해 극복될 수 있었다.

『일성록』의 과거 기사 작성 방식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일성록』 전체를 관통하는 강목체로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기사에 수록할 내용과 문형에도 통일성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기사의 열람이 보다 용이해졌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특징은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달리 생원·진사시와 문무과의 초시, 복시, 전시 등 시험의 전단계를 기사화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書題, 入門數, 收券數와 같은 새로운 정보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일성록』은 과거 기사에 관한 가장 풍부한 정보를 담은 자료로 남게 되었다. 기사의 수록 정도는 고종대에 들어 다소 하락하는 경향이 보이기는 하지만 모든 단계의 기사를 수록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일성록』의 과거 시행 기사는 정조대에 이미 기사의 내용과 문형에 통일성을 기하였다. 정조대에 누적된 사례들을 토대로 순조대 전반에 『일성록범례』가 편찬되었고, 이를 계기로 문형의 통일성이 갖추어졌다. 과거제가 폐지되는 고종 31년 (1894)까지도 이에 기초하여 과거 기사가 작성되었다. 고종 10년 경복궁 화재로 『일성록』의 상당부분이 소실되었지만 『일성록범례』를 준거로 개수본을 편찬하여 보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형식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식년시 문과 복시와 회시의 기사 형식도 통일되었다. 따라서 정조~고종대 『일성록』의 기사는 원본과 개수본을 막론하고 내용과 문형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일성록』은 승정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선별하여 綱目體로 편찬한 책이다. 따라서 많은 기사가 『승정원일기』와 중복된다. 과거 기사도 국왕이 친립하는 殿試나 성균관 과시 기사는 내용적으로 『승정원일기』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를 『일성록』의 편찬 범례에 따라 재구성하면서 초시, 복시 기사나 書題, 入門數·收券數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승정원일기』보다 훨씬 풍부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정조실록』 이후 실록의 과거 기사는 『일성록』의 기사를 선별

하고 산삭한 후 문형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정조대 이후의 실록 과거 기사는 영조대 이전의 기사에 비해 내용적으로도 풍부하며, 문형도 보다 일관된 형식을 유지하였다. 『일성록』의 편찬은 실록의 편찬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일성록』의 과거 시행 기사는 전체적으로 연대기의 기사가 소략해지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충실도를 유지한 기사로 꼽을 수 있다. 여기에는 기사의 내용이 간단하고 기사의 작성 방식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배경은 정치 사회적인 동요와 왕정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국왕과 정권은 여전히 王政의 건재를 확인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제로 과거를 활용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성록』 과거 시행 기사는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원칙 하에 작성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자료들을 추출하여 시계열적으로 배열하면 정조대에서 고종대까지의 과거 시행 경향을 통시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앞서 누차 지적한 것처럼 書題나 입문수, 수권수는 『일성록』만의 고유한 자료로 과거 시행의 장기 추세를 보여준다. 아울러 榜目 등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 문과나 생원·진사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자료가 부족한 성균관 과시나 각종 부정기적인 시험의 시행 기록이 풍부하다는 점도 『일성록』의 큰 장점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균관 과시가 지니는 의미와 그 시험의 국가 사회적인 영향력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몇 가지 예시만 제시하였을 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일성록』의 시계열적 자료에 대한 분석은 차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논문투고일(2017. 11. 13),	심사일(2015. 11. 24),	게재확정일(2015. 12. 18)
----------------------	--------------------	---------------------

참고문헌

1. 자료

-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正宗大王實錄廳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 간, 2005)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奎 14158)

2. 논저

- 김종수, 2003 「『승정원일기』 편찬체제와 타 문헌과의 비교 검토」, 『人文學論叢』 3, 국립7개대학공동논문집간행위원회.
- 명경일, 2014 「傳教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謄錄체계」, 『古文書研究』 44, 한국고문서학회.
- 박현순, 2014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 _____, 2016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 『규장각』 4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연갑수, 2004 「『日省錄』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 방안」, 『민족문화』 27, 한국고전번역원.
- 오항녕, 2004 「조선후기 국사체계(國史體系)의 변동에 관한 시론 : 실록(實錄)에서 일성록(日省錄)으로」, 『역사와현실』 52, 한국역사연구회.
- 吳恒寧, 2006 「조선후기 《承政院日記》 改修 연구」, 『泰東古典研究』 2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 유본예 지음, 김경희 옮김, 2015 『일성록변례』, 한국고전번역원.
- 이태진 · 홍순민, 1989 「《日省錄》 刀削의 실상과 경위」, 『한국문화』 1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승희, 1989 「1873年(高宗 10) 日省錄의 一部 燒失과 改修」, 『규장각』 1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연식, 2005 「純祖初 《正宗大王實錄》의 편찬과 《正宗大王實錄廳儀軌》」, 『正祖大王 實錄廳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홍순민, 2004 「『日省錄』의 편찬 과정과 구성 원리」, 『민족문화』 27, 한국고전번역원.

Abstract

An analysis of the Articles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the *Record of Daily Reflections* from the reign of King Jeongjo to Gojong

Park, Hyun Soon

Articles about civil service examinations contained in the *Record of Daily Reflections* have some distinc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ose in *Veritable records of Joseon dynasty* and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First, they were written in the detailed outline style and consistent in contents and sentence structure. Also they included every stage of the examinations, preliminary · advanced examinations, palace examinations etc.-different from *Veritable records of Joseon dynasty* and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Moreover, they added new informations such as examination questions, the number of candidates, and the number of answer sheets. Therefore, the *Record of Daily Reflections* contains the richest information on articles related to civil service examinations.

The number of articles decreased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but the principle of recording every stage of the examination still continued. Thus, we can understand the practice of civil service examinations from the reign of King Jeongjo to King Gojong by analyzing the materials contained in *Record of Daily Reflections*. Furthermore, we can also understand the tendency of the examination questions and the changes in the number of candidates through those related informations.

Key words : the *Record of Daily Reflections*, civil service examinations, examination questions, the number of candidates, the number of answer sheets